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61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61321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소23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22. 11. 10.

판결선고 2023. 2. 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소 232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09,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부터 2020. 8. 10.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한 자로서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139,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0571, 3심 대법원 2017다281039,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송들’이라 한다)의 변호사 선임비용 합계 7,70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카합1031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따라 C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7,700,000원을 포함한 8,346,860원의 소송비용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들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바 없음에도 C로부터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8,346,860원의 소송비용을 반환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대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한 7,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7,7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90,197원을 공제한 6,909,8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수, 판사 류창성, 판사 정희일